#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# 2. 개정이유

○ 법무사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유형을 규정하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명확성과 비례성을 높이고, 응시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며, 「법무사법」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 응시자의 시험의 일부 면제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법무사시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- 「법무사법」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 응시자가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할 서류에 '시험일부면제신청서' 및 '시험의 공고로 정하는 인사기록 출력물'을 추가하고, 동일한 면제 조건으로 재응시하는 자의 경력증명서 등 제출에 관한 특례를 정합(안 제8조제2항)
- O 현행 1만원인 법무사시험 응시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여 조정함 (안 제9조제1항)

-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위원장이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사후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함(안 제제12조제4항 신설)
- 법무사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유형과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의 유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(안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)

## 4.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・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무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일부면제신청서와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및 시험의 공고로 정한 공무원 인사기록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미 시험일부면제신청서와 경력증명서 및 시험의 공고로 정하는 공무원 인사기록 출력물을 제출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은자가 동일한 면제 조건으로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③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 제2항의 서류를 추가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제4항(종전의 제3항)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하여 같은 호를 제2호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"(수험수수료)"를 "(응시수수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"응시수수료로서 10,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 야"를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"로 하 며, 같은 조 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차 시험: 2만원
- 2. 제2차 시험: 4만원

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경우로 인정되면 위원장은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,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해당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 제목 중 "부정행위"를 "부정행위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-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2.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
-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-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5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②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- 1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2.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3.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4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법원행정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-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,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5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한 경우 및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8조(출원서류) ① (생 략)

②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 시험일 후 14일이내에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8조(출원서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 고자 하는 자는 시험일부면제신 청서와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 함된 경력증명서 및 시험의 공 고로 정한 공무원 인사기록 출 력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미 시험일부면제신청서와 경 력증명서 및 시험의 공고로 정 하는 공무원 인사기록 출력물을 제출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은 자가 동일한 면제 조건으 로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 제2항의서류를 추가로 다시 제출하여야한다.

- ③ (생략)
- 1. (생략)
- 2. 이력서
- 3.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
- ④ 제1항부터 <u>제3항</u>까지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제9조(수험수수료)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서 10,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, 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<u><신 설></u>

<u><신 설></u>

② (생 략)

제12조(위원회의 회의) ① ~ ③ (생 략)

<신 설>

<u>-</u> 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삭 제&gt;</u>
2. 그 밖에
<u>⑤</u> <u>제4항</u>
제9조 <u>(응시수수료)</u> ①
<u>다음 각 호</u>
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
<u> 수입인지로 내야</u>
,
1. 제1차 시험: 2만원
<u>2. 제2차 시험: 4만원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위원회의 회의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
구하고 법무사시험에 관한 사항

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릴

수 없는 긴급한 경우로 인정되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5조(부정행위에 대한 조치) ① 제1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 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 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면 위원장은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 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 을 받아야 하며, 위원회의 추인 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해당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①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 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 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 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을 정지한다.

-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 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 는 행위
- 2.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 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
-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

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나 합격 결정 이 취소된 자는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3년간 응시하지 못한다.

<신 설>

나 이용하는 행위

- 5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②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 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 한다.
- 1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2.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3.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 는 행위
- 4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-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,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

- 자에 대한 조치) ①・② (생 략)
 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 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한 다.
  - 1. 2. (생략)
  - 3.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 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

4. ~ 8. (생략)

ユ	이유	를	붙여	처분들	을 받	은 사
람	에게	알	려야	한다.		

제15조의2(응시자 준수사항 위반 제15조의2(응시자 준수사항 위반 자에 대한 조치) ① • ② (현행 과 같음)

3	 	 	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한 경우 및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 <u>한</u> 경우
- 4. ~ 8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					
연 락 처	(02) 3480-1893				